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383
-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찬성자 10명)
- 발 의 일 : 2025년 2월 3일
-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는 자치구 간 협력 증진과 서울시 주요 정책의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과도한 경쟁 유발, 평가 기준의 모호성,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다만, 조례 폐지 시 자치구 간 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과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의 필요성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이에 시행계획 수립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 시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제1항)

- 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 변경(안 제5조제3항)
- 다.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심의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조정(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라.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에서 '즉시 차등 지원' 표현을 삭제하여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 2. 11. ~ 2. 1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운영 방식 및 행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필요시 탄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안 제5조),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며(안 제6조), 사업비 교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안 제8조) 방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과 시정 역점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구에 예산(인센티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매년 시장방침에 따라 시행되어 오다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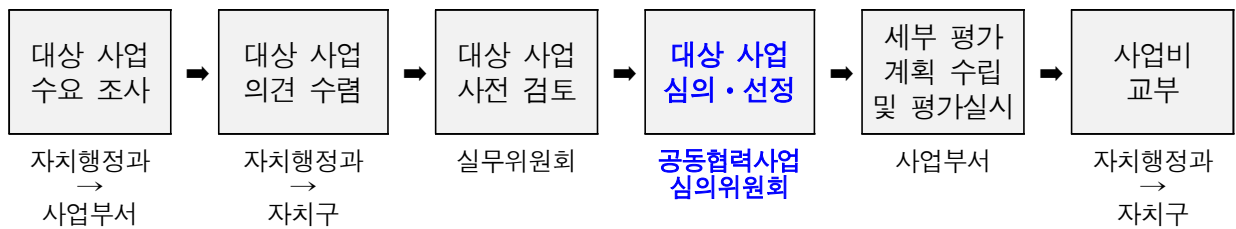
※ 경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대신 상생을 의미하는 '공동협력'으로 조례명(사업명) 및 본문 내용을 변경, 외래어를 순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2017.4.28)한 바 있음.

[추진경과]

- '99년 ~ '08년 : 자체 계획으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운영
- '09년 ~ '16년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정·운영
- '17년 ~ '20년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개정·운영
 - 경쟁을 나타내는 '인센티브' 대신 상생을 의미하는 '공동협력'으로 사업명 변경('17.5월 개정)
- '20년 ~ 현재 : 코로나19 관련 자치구 업무 과중 고려하여 사업 중단

[사업개요]

- 사업명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추진내용 : 서울시 주요 역점사업 등에 대한 자치구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
- 추진방법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 차등 지원



※ 출처: 행정국 제출자료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은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자치구 간 출혈 경쟁 심화와 줄세우기라는 부작용 발생,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 증가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 10월 동 조례 폐지 조례안이 발의(임종국 의원 외 30명)되었으나 임기말 폐기된 바 있음.
- 본 개정안은 시행계획 수립의 탄력성 제고,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예산집행의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의 탄력적 수립,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공동협력 사업비 교부방식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여, 운영방식 및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원안 동의).

나. 세부 내용 검토

1) 시행계획 수립의 탄력적 운용(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을 필요시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제출 기한을 변경하여 시행계획 수립 관련 업무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u>매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 ----- <u>서울특별시</u> <u>시</u> -----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u>매년 시행계획</u> 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협력사업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u>시행계획</u> ----- ----- -----.
③ 시장은 <u>제1항의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제2항의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③ ----- <u>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u> ----- -----.

- 최근 10년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 12개 사업 추진을 끝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2020년 이후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바, 시·자치구간 협력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10년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연도별 사업 개수 및 예산 총액]

연도(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수 (개)	12	10	8	11	12	사업 미추진				
예산액 (백만원)	8,000	8,000	8,000	8,000	7,400					

- 다만,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부의 재량화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을 장기간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는 없는지, 일관된 기준없이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계획이 수립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부작용(자치구 간 과도한 경쟁, 평가기준의 모호성, 업무부담 가중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비상설화(안 제6조)

- 안 제6조는 사업 실행계획 수립의 재량화(안 제5조)에 따라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제6조(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서 신설>	① ----- ----- ----- ----- -----	① ----- ----- ----- ----- -----	. 다만,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u>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u></p> <p>2. 3. (생략)</p>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u></p> <p>⑤·⑥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u>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u></p> <p>2. 3. (현행과 같음)</p> <p><u>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u></p> <p>⑤·⑥ (현행과 같음)</p>
---	---

○ 심의위원회는 현행 규정상 상설 위원회이나, 공동협력사업 중단에 따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로, 위원회의 비상설화를 통해 규정 미준수 상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위원회 미구성 사유로, 코로나19 확산('20년)으로 인한 자치구 업무 과중으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이 중단됨에('21년)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는 2024년 2월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목적·기능상 운영이 필요하지만,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대상) 정비대상 위원회로 지정되었음.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6조(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제7조(사업의 선정·평가 등)
- 기능 : 시·자치구 공동협력 대상사업 심의·선정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시 3급 이상 공무원, 지방재정 및 시정의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유형 : 상설('10년 신설, 강행)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 위촉직 위원 11명 전원 임기 만료(' 22. 6. 30.)에 따라 위원회 미구성

○ 최근 5년간(2016~2020) 개최 현황 ※ ' 21년 이후 위원회 미개최

개최연도	개최일자	심의내용	심의방식
2016	2. 7.(수)	공동협력 신청사업 평가지표 검토 및 최종선정	대면심의
2017	3. 7.(화)		대면심의
2018	4. 3.(화)		대면심의
2019	3. 6.(수)		대면심의
2020	5. 8. ~ 5. 11.		서면심의

3)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 조정(안 제8조)

- 안 제8조는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방식을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시장은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를 교부할 때는 사업 실적 및 평가결과에 따라 <u>즉시 차등 지원</u>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협력사업비의 교부) ① ----- ----- ----- <u>지원</u> -----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	② -----

<p>되는 <u>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u></p> <p>③ (생략)</p>	<p>--- <u>공동협력사업비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9조</u>-----</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 다만, 탄력적인 예산 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자의적이고 시혜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이 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한 세부 교부 기준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5조를 근거 법령으로 제정·운용하고 있고, 동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바, ‘탄력적 예산 운영’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내지 ‘시장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취지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감안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위원	정 찬 일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16~'20) 사업추진 실적] ※ '21년 이후 사업 미실시

(단위 : 백만 원)

연도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계				8,000
2016	1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000
	2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600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500
	4	사람이 중심되는 '걷는 도시, 서울' 조성	교통정책과 (보도환경개선과)	1,000
	5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900
	6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000
	7	2016 서울, 꽃으로 피다	공원녹지정책과	500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1,200
	9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문화정책과	800
	10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사회혁신담당관)	500
계				8,000
2017	1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200
	2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4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100
	4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1,100
	5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600
	6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서울	보건의료정책과	700
	7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800
	8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100
계				8,000
2018	1	2018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1,100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1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100
	4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1,100
	5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700
	6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700

연도	연번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7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700
	8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500
	9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500
	10	시민 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서울」 추진	공원녹지정책과	500
	11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자체기금 198백만원)	체육진흥과	0
계				7,400
2019	1	2019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1,000
	2	효과적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1,000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1,000
	4	2019년 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900
	5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700
	6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 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700
	7	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주거환경개선과 주택공급과 공공주택과	700
	8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500
	9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300
	10	시민협력을 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만들기	공원녹지정책과	300
	11	공공시설 대상 민관협력을 통한 공유 활성화	사회혁신담당관	300
	12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자체기금 198백만원)	체육진흥과	-
계				
2020	1	2020 서울 희망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사업추진 중 전액 감추경
	2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복지체계 구축	복지정책과	
	3	지속가능한 「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환경정책과	
	4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5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	하천관리과	